##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44

발의연월일: 2025. 1. 6.

발 의 자:윤후덕・이기헌・홍기원

정성호 · 김병주 · 박수현

정준호 • 박홍배 • 백혜련

이병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체력단련장 등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, 대부분의 체 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체육시설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,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 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소비 자원 등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6호및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"선불이용료"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한 3개월 이상의 이용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차 이용료를 말한다.
-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다만,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때에도 약정기준이 본문에 따른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보다 일반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-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②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(이하 이 조에서 "이용자"라 한다)로부터 제2조제6호의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제22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이용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- 제30조제8호 중 "제26조에 따른 보험"을 "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

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"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제4호 중 "제26조"를 "제26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증보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체육시설업자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6. "선불이용료"란 체육시설을
	이용하는 회원 또는 일반이용
	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
	에 따라 미리 지급한 3개월
	이상의 이용료 또는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회차 이용료를
	<u>말한다.</u>
제22조(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	제22조(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
항) ① 체육시설업자는 다음	화. ①
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4
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	
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	
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	
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	
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	
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	
할 것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<u>다만, 일반이용자와 약</u>
	정한 때에도 약정기준이 본문

가.·나.(생략) 5.(생략) ②(생략) 제26조(보험가입)(생략)

<신 설>

제30조(시정명령) 시·도지사, 시 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 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 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 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보다 일반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 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하여 야 한다.

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
- 5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- 제26조(보험 가입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  - ②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(이하이 조에서 "이용자"라 한다)로 부터 제2조제6호의 선불이용료를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이용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세30조(시정명령)

다.

- 1. ~ 7. (생 략)
- 8. <u>제26조에 따른 보험</u>에 가입 하지 아니한 때
- 제40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1. ~ 3. (생략)
  - 4. <u>제26조</u>에 따른 보험에 가입 하지 아니한 자

<신 설>

5. · 6. (생략)

② (생 략)

- 1. ~ 7. (현행과 같음)
- 8. <u>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 또</u> 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 증보험-----

제40조(과태료) ① -----

\_\_\_\_\_

----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4. <u>제26조제1항</u>-----

\_\_\_\_\_

- 4의2. 제26조제2항에 따른 보증

  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
- 5. 6. (현행과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